

● 제31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378, 383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22. 10. 17.
- 다. 회 부 일 : 2022. 10. 21.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최종 예산대비 6.1% 증액된 6조 2,660억 8천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23년 복지정책실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 최종예산 | 2023예산(안) | 증 · 감 | |
|------|-----------|-----------|---------|-------|
| | | | 증감액 | 비율(%) |
| 계 | 5,907,555 | 6,266,084 | 358,529 | 6.1% |
| 일반회계 | 4,155,280 | 4,353,189 | 197,909 | 4.8% |
| 특별회계 | 1,752,275 | 1,912,895 | 160,620 | 9.2% |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 예산과목 (장/관/항/목)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 예산(안) | 2022년 대비 증감 | 증감률 |
|-------------------|---------------|----------------|----------------|--------|
| 합 계 | 5,907,555,254 | 6,266,084,540 | 358,529,286 | 6.1% |
| 일반회계 | 4,155,280,474 | 4,353,189,108 | 197,908,634 | 4.8% |
| 200 세외수입 | 59,555,830 | 84,276,237 | 24,720,407 | 41.5%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13,511,119 | 12,604,124 | △906,995 | △6.7%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46,041,376 | 71,666,650 | 25,625,274 | 55.7% |
|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3,335 | 5,463 | 2,128 | 63.8% |
| 300 지방교부세 | 390,000 | 0 | △390,000 | 순감 |
| 310 지방교부세 | 390,000 | 0 | △390,000 | 순감 |
| 500 보조금 | 4,076,566,973 | 4,254,576,389 | 178,009,416 | 4.4% |
| 510 국고보조금등 | 4,076,566,973 | 4,254,576,389 | 178,009,416 | 4.4%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8,767,671 | 14,336,482 | △4,431,189 | △23.6% |
| 710 보전수입등 | 18,767,671 | 14,336,482 | △4,431,189 | △23.6%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752,274,780 | 1,912,895,432 | 160,620,652 | 9.2% |
| 200 세외수입 | 5,155,175 | 3,507,643 | △1,647,532 | △32.0%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1,050,000 | 751,000 | △299,000 | △28.5%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2,855,175 | 2,380,723 | △474,452 | △16.6% |
|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250,000 | 375,920 | △874,080 | △69.9% |
| 500 보조금 | 867,985,512 | 952,626,424 | 84,640,912 | 9.8% |
| 510 국고보조금등 | 867,985,512 | 952,626,424 | 84,640,912 | 9.8% |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879,134,093 | 956,761,365 | 77,627,272 | 8.8% |
| 710 보전수입등 | 11,148,581 | 4,134,941 | △7,013,640 | △62.9% |
| 720 내부거래 | 867,985,512 | 952,626,424 | 84,640,912 | 9.8% |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은 9조 9,467억 8천 3백만원
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9조 5,846억 5백만원 대비 3.8% 증액된
수준임.

〈표〉 2023년 복지정책실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 예산(안) | 2022년 대비 증감 | 증감률 |
|------|---------------|----------------|----------------|------|
| 계 | 9,584,605,548 | 9,946,783,962 | 362,178,414 | 3.8% |
| 일반회계 | 7,830,465,768 | 8,032,022,530 | 201,556,762 | 2.6% |
| 사업비 | 6,625,011,556 | 7,014,914,477 | 389,902,921 | 5.9% |

| 구분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 예산(안) | 2022년 대비 증감 | 증감률 |
|------------|---------------|----------------|----------------|--------|
| 행정운영경비 | 523,161 | 621,208 | 98,047 | 18.7% |
| 재무활동비 | 1,204,931,051 | 1,016,486,845 | △188,444,206 | △15.6% |
| 특별회계 | 1,754,139,780 | 1,914,761,432 | 160,621,652 | 9.2%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752,274,780 | 1,912,895,432 | 160,620,652 | 9.2% |
| 사업비 | 1,752,164,250 | 1,912,783,432 | 160,619,182 | 9.2% |
| 행정운영경비 | 110,530 | 0 | △110,530 | 순감 |
| 재무활동비 | 0 | 112,000 | 112,000 | 순증 |
| 균형발전특별회계 | 1,865,000 | 1,866,000 | 1,000 | 0.1% |

○ 2023년도 복지정책실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예산

〈표〉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 2022년 최종예산 | 2023 예산안 | 최종예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복지정책실 | 9,584,606 | 9,946,784 | 362,178 | 3.8% |
| 복지정책과 | 4,348,916 | 4,274,139 | △74,777 | △1.7% |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3,160,160 | 3,272,923 | 112,762 | 3.6% |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 1,191,579 | 1,121,292 | △70,287 | △5.9% |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52,541 | 76,329 | 23,788 | 45.3% |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 137,561 | 139,079 | 1,517 | 1.1% |
|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26,315 | 23,439 | △2,876 | △10.9% |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752,164 | 1,912,783 | 160,619 | 9.2%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382 | 373 | △9 | △2.3% |
| 기본경비 | 272 | 264 | △7 | △2.7% |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11 | 0 | △111 | 순감 |
| 인력운영비(일반회계 의료급여관리사) | 0 | 109 | 109 | 순증 |
| 일반예산(재무활동) | 1,188,374 | 1,000,843 | △187,531 | △15.8% |
| 내부거래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1,185,793 | 1,000,731 | △185,062 | -15.6% |
| 보전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2,580 | 0 | △2,580 | 순감 |
| 보전지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 | 112 | 112 | 순증 |
| 안심소득추진과 | 243 | 1,297 | 1,054 | 433.4% |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 237 | 1,277 | 1,040 | 439.0% |
|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 237 | 1,277 | 1,040 | 439.0% |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 2022년 최종예산 | 2023 예산안 | 최종예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 6 | 19 | 13 | 215.9% |
| 기본경비 | 6 | 19 | 13 | 215.9% |
| 안심돌봄복지과 | 294,990 | 308,366 | 13,375 | 4.5% |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 294,945 | 308,325 | 13,379 | 4.5% |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3,519 | 3,523 | 4 | 0.1% |
|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 97,260 | 99,811 | 2,550 | 2.6% |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 194,166 | 204,991 | 10,825 | 5.6%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45 | 41 | △4 | △8.9% |
| 기본경비 | 45 | 41 | △4 | △8.9% |
| 어르신복지과 | 3,448,410 | 3,763,072 | 314,663 | 9.1% |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 3,448,171 | 3,757,090 | 308,919 | 9.0% |
| 독거·재거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 58,859 | 66,383 | 7,523 | 12.8% |
|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 2,742,434 | 3,071,069 | 328,635 | 12.0% |
|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 278,454 | 284,707 | 6,253 | 2.2% |
|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 286,810 | 298,820 | 12,010 | 4.2% |
| 어르신의 여가복지 지원 | 547 | 0 | △547 | 순감 |
|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 81,066 | 36,111 | △44,955 | △55.5%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78 | 65 | △13 | △16.3% |
| 기본경비 | 78 | 65 | △13 | △16.3% |
|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161 | 5,917 | 5,756 | 3,577.2% |
| 보전지출 | 161 | 5,917 | 5,756 | 3,577.2% |
| 장애인복지정책과 | 206,202 | 211,365 | 5,163 | 2.5% |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 202,390 | 207,978 | 5,588 | 2.8% |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199,496 | 204,466 | 4,971 | 2.5% |
|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 2,163 | 3,121 | 959 | 44.3% |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 732 | 390 | △341 | △46.7%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47 | 46 | △0 | △0.8% |
| 기본경비 | 47 | 46 | △0 | △0.8% |
|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3,765 | 3,340 | △425 | △11.3% |
| 내부거래지출 | 63 | 122 | 59 | 93.3% |
| 보전지출 | 3,702 | 3,219 | △483 | △13.1% |
| 장애인자립지원과 | 1,074,621 | 1,157,475 | 82,854 | 7.7% |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 1,062,137 | 1,150,932 | 88,796 | 8.4% |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지원(균특) | 1,865 | 1,866 | 1 | 0.1% |
|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 23,980 | 18,803 | △5,178 | △21.6%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 934,301 | 1,016,030 | 81,728 | 8.7% |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 2022년 최종예산 | 2023 예산안 | 최종예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92,805 | 101,945 | 9,140 | 9.8% |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 9,185 | 12,289 | 3,104 | 33.8% |
|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43 | 44 | 1 | 2.4% |
| 기본경비 | 43 | 44 | 1 | 2.4% |
|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12,442 | 6,498 | △5,943 | △47.8% |
| 내부거래지출 | 7,344 | 6,498 | △846 | △11.5% |
| 보전지출 | 5,097 | 0 | △5,097 | △100.0% |
| 자활지원과 | 211,224 | 231,071 | 19,847 | 9.4% |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 64,812 | 68,390 | 3,578 | 5.5% |
| 노숙인 자활지원 | 25,563 | 25,330 | △233 | △0.9% |
|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 39,249 | 43,060 | 3,811 | 9.7% |
|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 146,189 | 162,649 | 16,460 | 11.3% |
|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 146,189 | 162,649 | 16,460 | 11.3%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33 | 32 | △1 | △3.0% |
| 기본경비 | 33 | 32 | △1 | △3.0% |
| 일반예산(재무활동) | 190 | 0 | △190 | 순감 |
|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190 | 0 | △190 | 순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Ⅱ.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지향)

i 세입 예산안 검토

- 복지정책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세입예산은 총 6조 2,660억 8천4백만원으로 '22년 세입예산 총 5조 9,075억 7천5백만원보다 3,585억 2천9백만원 증액(6.1%) 편성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 예산(안) | 증 · 감 | |
|------------------|---------------|----------------|---------|-------|
| | | | 증감액 | 비율(%) |
| 계 | 5,907,555 | 6,266,084 | 358,529 | 6.1% |
| 일반회계 | 4,155,280 | 4,353,189 | 197,909 | 4.8% |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 1,752,275 | 1,912,895 | 160,620 | 9.2%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조 3,531억 8천9백만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4조 1,552억 8천만원보다 1,979억 9백만원 증액(4.8%)되었음.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임대료 179백만원)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209백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412백만원)으로서, 8억 9백만원(전년대비 31.5%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 재산임대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재산임대수입 | 608,928 | 800,980 | 192,052 | 31.5% | <복지정책과>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79,110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209,782 <어르신복지과> ○ 승회원 및 추모공원 임대수입 412,088 |

○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

- 수수료 수입은 승회원과 추모공원 제증명 수수료(화장 및 납골증명 등 증지수입)를 반영한 것으로서 세입추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 수수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수수료수입 | 35,487 | 38,608 | 3,121 | 8.8% | <어르신복지과> ○ 승회원 및 추모공원 제증명 수수료 38,608 |

〈표〉 2023년 사업수입(주차장 수입 및 그외) 세입추계

(단위: 천원, %)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사용료수입 | 76,737 | 67,090 | △9,647 | △12.6% | <어르신복지과> ○ 서울추모공원 주차장 수입 57,294 <장애인자립지원과> ○ 송전선로 통과 토지점용료 9,796 |
| 사 업 수 입 | 12,290,410 | 11,115,019 | △1,175,391 | △9.6% | <어르신복지과> ○ 승회원 및 추모공원 화장 사용료 8,923,828 ○ 시립승회원 분묘 재사용료 335,178 |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 | | | | ○ 시립승화원 자연장 사용료 수입 827,700 ○ 시립승화원 봉안·분묘관리비 수입 576,000 ○ 승화원 및 시립승화원 봉안함 판매수입 340,978 ○ 시립승화원 봉안 사용료 및 재사용료 수입 111,335 |

○ 기타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2년 기타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기타수입 | 3,204,940 | 5,236,105 | 2,031,165 | 63.4% | ○ 보금전용카드수입 4,571,082 ○ 기타잡입 665,023 |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 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40억 5천3백만원)과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5억8천만원)을 반영한 세입 편성안임.

〈표〉 지난년도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과 목 | 2021년 | 2022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지난년도수입 | 3,295,260 | 4,635,770 | 1,340,510 | 40.7% | ○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지난년도 부과 세입 중 체납분 4,053,630 ○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 582,140 |

○ 국고보조금

- 2023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4% 증액한 4조 2,545억 7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표〉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국고보조금 등 | 4,076,566,973 | 4,254,576,389 | 178,009,416 | 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4,189,672,65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3,443,664 ○ 기금 11,460,072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023년도 복지정책실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43억 1천6백만원)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원금 수입(1,967만원)으로 전년 예산(187억 6천8백만원) 대비 23.6% 감액한 143억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 2022년 | 2023년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18,767,671 | 14,336,482 | △4,431,189 | △2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19,672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316,810 |

〈표〉 최근 5년간 세부 내역별 징수 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계 | 77,001 | 70,519 | 38,614 | 29,501 | 23,336(추정) |
| 용자금 원금 회수 | 77,001 | 70,519 | 38,614 | 29,501 | 23,336(추정) |

〈표〉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과 목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 예산(안)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합계 | 4,155,280,474 | 4,353,189,108 | 209,921,088 | 4.8% | |
| 재산임대수입 | 608,928 | 800,980 | 192,052 | 3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78 → 179백만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208 → 210백만원) •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 (223 → 412백만원) |
| 사용료수입 | 76,737 | 67,090 | △9,647 | △12.6% | • 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사용료 수입 (77→67백만원) |
| 수수료수입 | 35,487 | 38,608 | 3,121 | 8.8% | • 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35 → 39백만원) |
| 사업수입 | 12,290,410 | 11,115,019 | △1,175,391 | △9.6% | • 시립승화원·추모공원 사업수입 (12,290 → 11,115백만원) |
| 이자수입 | 499,557 | 582,427 | 82,870 | 16.6% | •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500 → 582백만원) |
| 재산매각수입 | 10,500 | 33,676 | 23,176 | 220.7% | • 불용품매각대 (11 → 34백만원) |

| 과 목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 예산(안)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보조금반환수입 | 39,530,676 | 61,761,099 | 22,230,423 | 5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815 → 4,266백만원) •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33,716 → 54,388백만원) • 위탁금반환수입 (0 → 3,107백만원) ※ '23년 통계목 신설 |
| 기타수입 | 3,204,940 | 5,236,105 | 2,031,165 | 6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금 (2,521 → 4,571백만원) • 기타 잡수입 (684 → 665백만원) |
| 지난년도수입 | 3,295,260 | 4,635,770 | 1,340,510 | 4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 (2,685 → 4,053백만원) •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 (610 → 582백만원) |
| 변상금 | 3,335 | 5,463 | 2,128 | 63.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재산 변상금 (3 → 5백만원) |
| 지방교부세 | 390,000 | 0 | △390,000 |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390백만원 → 0) |
| 국고보조금등 | 4,076,566,973 | 4,254,576,389 | 178,009,416 | 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4,924,764 → 5,142,299백만원) • 국가균특 보조금 (9,339 → 53,444백만원)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449 → 11,460백만원) |
| 보전수입등 | 18,746,972 | 14,316,810 | △4,430,162 | △2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747 → 14,317백만원) |
| 융자금원금수입 | 20,699 | 19,672 | △1,027 |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21 → 20백만원) |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 1조 7,522억 7천4백만원에 비해 9.2% 증액된 1조 9,128억 9천5백만원을 (전년대비 1,606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표〉 2023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2022년 (최종예산) | 2023년(안) | 증 감 | 증감률 | 내 역 |
|----------------|-----------------|-----------|---------|--------|---------------------------------------------------------------------------------------------------------------------------------------|
| 계 | 1,752,275 | 1,912,895 | 160,621 | 9.2% | |
| 세외수입 | 5,155 | 3,508 | △1,648 | △3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금 이자수입 751 ◦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 2,381 ◦ 의료급여법 제29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376 |
| 보조금 | 867,986 | 952,626 | 84,641 | 9.8% | ◦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952,626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 879,134 | 956,761 | 77,627 | 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 4,135 ◦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952,626 |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7천5백만원),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28억 8천1백만원), 의료급여법 제29조¹⁾에 의한 과징금 수입(3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액되었음. 보조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9.8% 증액한 9,526억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67억 6천1백만원은 전년 대비 8.8%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1) 「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과징금 수입에 대한 결산 내역과 세입 추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연도별 과징금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 요구액 |
|-------------|-------------|-------------|-------------|---------|---------|-----------|-----------|-------------|
| 예산액 | 결산액 | 예산액 | 징수액 | 예산액 | 징수액 | 예산액 | 결산전망 | |
| 773,284,914 | 774,164,115 | 773,284,914 | 774,164,115 | 158,913 | 614,641 | 1,250,000 | 1,250,000 | 375,920 |

※ 국고보조금 제외

〈표〉 2023년 과징금 세입추계

- 2023년 추계액 : 375,920천원
- 산출내역: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수입

II 세출 예산안 검토(조직별 예산안 총괄적 검토)

가. 총괄검토

- 2023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편성 방향은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특별시, 지역사회 안심돌봄 지원,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 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강화’ 라는 목표를 가짐.
- 2023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8조 9,848억원 대비 9,620억원이 증액(10.7%)된 9조 9,468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재원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8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29억원이 증액된 7조 8,746억원이며, 자체 시비사업은 111

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676억원이 증액된 1조 550억원임.

〈표〉 2023년 복지정책실 과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부서명 | 2022 예산(A) | 2023 예산안(B) | 증감 (C=B-A) | 증감률 (B/A) |
|----------|------------|-------------|------------|-----------|
| 복지정책실 | 5,907,556 | 6,266,084 | 358,529 | 6.1% |
| 복지정책과 | 2,630,545 | 2,693,790 | 63,246 | 2.4% |
| 안심소득추진과 | - | - | - | - |
| 안심돌봄복지과 | 40,549 | 49,844 | 9,295 | 22.9% |
| 어르신복지과 | 2,636,719 | 2,878,254 | 241,535 | 9.2% |
| 장애인복지정책과 | 54,652 | 50,273 | △4,379 | △8.0% |
| 장애인자립지원과 | 440,540 | 475,653 | 35,113 | 8.0% |
| 자활지원과 | 104,551 | 118,270 | 13,719 | 13.1% |

1.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4조 3,489억 1천6백만원에서 1.7% 감소한 4조 2,741억 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 5,654,533 | 6,245,451 | 590,918 | 10.45%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51,958,346 | 75,788,567 | 23,830,221 | 45.86% |
| 전출금(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210,600 | 288,120 | 77,520 | 36.81% |
|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 | | | |
| 보훈단체 지원 | 4,442,400 | 3,487,000 | △955,400 | △21.51% |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 2,029,011 | 1,540,301 | △488,710 | △24.09% |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483,937 | 415,672 | △68,265 | △14.11% |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 18,999,619 | 16,884,844 | △2,114,775 | △11.13% |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 317,597,274 | 47,816,425 | △269,780,849 | △84.94% |
| □ 신규사업 | | | | |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 - | 359,600 | 359,600 | 순증 |

2. 안심소득추진과

- 안심소득추진과는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2억 4천3백만원에서 433.4% 증액된 12억 9천7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표〉 2023년 안심소득추진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 75,000 | 346,200 | 271,200 | 361.6% |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선정 추진 | 12,000 | 346,200 | 334,200 | 2,785.0%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 150,000 | 585,000 | 435,000 | 290.0% |

3. 안심돌봄복지과

- 안심돌봄복지과는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2,949억 9천만원에서 4.5% 증액된 3,083억 6천6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표〉 2023년 안심돌봄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2,393,511 | 3,669,721 | 1,276,210 | 53.32% |
|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 859,500 | 1,172,170 | 312,670 | 36.38% |
|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리비 | 2,677,500 | 3,145,500 | 468,000 | 17.48%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 13,000 | 28,000 | 15,000 | 115.38% |
| 스마트플러그 지원 | 220,000 | 300,000 | 80,000 | 36.36%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65,000 | 208,000 | 143,000 | 220.00% |
|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 | - | 6,940,800 | 6,940,800 | 순증 |
|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지원 | 216,000 | 864,000 | 648,000 | 300.00% |

4.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3조 4,484억 1천만원에서 9.1% 증액된 3조 7,630억 7천 2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2023년 어르신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기초연금 지급 | 2,740,152,565 | 3,068,664,427 | 328,511,862 | 11.99%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45,056,640 | 51,940,560 | 6,883,920 | 15.28% |
|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 4,702,000 | 6,000,000 | 1,298,000 | 27.61% |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37,553,016 | 42,569,424 | 5,016,408 | 13.36% |
|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 4,741,161 | 6,405,065 | 1,663,904 | 35.09% |
|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 431,153 | 812,711 | 381,558 | 88.50% |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 4,623,871 | 5,162,248 | 538,377 | 11.64% |
|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 | | | |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9,821,262 | 7,570,687 | △2,250,575 | △22.92% |
|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 14,955,200 | 4,129,000 | △10,826,200 | △72.39% |
| 노인지원주택 운영 | 936,403 | 762,606 | △173,797 | △18.56% |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 2,124,277 | 1,871,841 | △252,436 | △11.88%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2,621,080 | 2,291,418 | △329,662 | △12.58% |
| □ 신규사업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 - | 2,933,500 | 2,933,500 | 순증 |
| VR 활용 독거어르신을 위한 경험디자인 | - | 200,000 | 200,000 | 순증 |

5.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2,062억 2백만원에서 51억 6천 3백만원(2.5%) 증액된 2,113억 6천 5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2023년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 7,055,210 | 9,473,103 | 2,417,893 | 34.27% |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 4,185,314 | 4,619,037 | 433,723 | 10.36% |
| 탈시설 협치 추진 | 1,391,600 | 1,851,600 | 460,000 | 33.06%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316,000 | 501,760 | 185,760 | 58.78% |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 1,522,000 | 1,800,000 | 278,000 | 18.27% |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 303,646 | 350,724 | 47,078 | 15.50% |
|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 1,105,180 | 1,266,800 | 161,620 | 14.62% |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44,000 | 50,000 | 6,000 | 13.64% |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지원 | 44,000 | 52,000 | 8,000 | 18.18% |
| 성인권 교육 지원 | 36,000 | 42,000 | 6,000 | 16.67% |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시비) | 510,150 | 1,029,331 | 519,181 | 101.77% |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430,800 | 2,174,000 | 1,743,200 | 404.64% |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577,265 | 4,170,634 | 3,593,369 | 622.48% |
|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 2,162,700 | 3,121,300 | 958,600 | 44.32% |
| 전출금(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 63,034 | 121,820 | 58,786 | 93.26% |
|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 | | | |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1,142,000 | 868,613 | △273,387 | △23.94%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 731,706 | 390,233 | △341,473 | △46.67% |
| □ 신규사업 | | | | |
| 장애인식개선 청년 동아리 지원 | - | 35,000 | 35,000 | 순증 |
|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 | - | 3,800 | 3,800 | 순증 |

6.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으로 장애인자립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1조 746억 2천 1백만원에서 7.8% 증액된 1조 1,574억 7천 5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2023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 912,342 | 1,126,168 | 213,826 | 23.44% |
|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 5,022,500 | 6,233,500 | 1,211,000 | 24.11% |
|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 6,467,500 | 7,514,000 | 1,046,500 | 16.18% |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 19,693,000 | 22,490,000 | 2,797,000 | 14.20% |
|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1,249,000 | 1,542,667 | 293,667 | 23.51% |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 4,557,264 | 5,802,864 | 1,245,600 | 27.33% |
| 케어플러스 센터 운영 | 1,909,963 | 3,053,059 | 1,143,096 | 59.85% |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 21,438,570 | 23,844,000 | 2,405,430 | 11.22% |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 6,575,183 | 7,356,763 | 781,580 | 11.89%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 7,784,000 | 8,988,000 | 1,204,000 | 15.47% |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 153,733 | 260,343 | 106,610 | 69.35%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 491,884,854 | 547,629,215 | 55,744,361 | 11.33%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 4,873,824 | 6,090,615 | 1,216,791 | 24.97% |
| 장애수당-기초 | 21,131,266 | 28,797,889 | 7,666,623 | 36.28% |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 400,000 | 1,323,000 | 923,000 | 230.75% |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 120,000 | 260,000 | 140,000 | 116.67%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4,947,193 | 18,667,468 | 3,720,275 | 24.89%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8,448,000 | 11,114,000 | 2,666,000 | 31.56%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25,930,731 | 31,262,050 | 5,331,319 | 20.56% |
|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 65,340 | 1,000,000 | 934,660 | 1,430.46% |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 3,117,000 | 4,495,000 | 1,378,000 | 44.21% |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 1,182,000 | 3,396,000 | 2,214,000 | 187.31% |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3,154,183 | 3,902,478 | 748,295 | 23.72% |
| 전출금(장애인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 43,000 | 140,408 | 97,408 | 226.53% |
|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 | | |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운영 | 2,351,625 | 1,700,851 | △650,774 | △27.67% |
| 장애인의료비 지원 | 5,327,598 | 4,653,208 | △674,390 | △12.66%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86,200 | 156,600 | △29,600 | △15.90% |
|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 조성 및 운영 | 650,974 | 320,491 | △330,483 | △50.77%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 | 500,000 | 75,084 | △424,916 | △84.98% |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 937,500 | 343,680 | △593,820 | △63.34% |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 1,890,593 | 1,579,093 | △311,500 | △16.48%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 427,000 | 267,512 | △159,488 | △37.35% |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19,460,301 | 14,900,083 | △4,560,218 | △23.43% |
| 전출금(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7,301,466 | 6,358,000 | △943,466 | △12.92% |

7. 자활지원과

- 자활지원과는 노숙인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노숙인 자활지원 및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2022년 최종예산 2,112억 2천4백만원에서 9.4% 증액된 2,310억 7천1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표〉 2023년 자활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 | | | |
| 거리노숙인 보호 | 8,695,734 | 10,670,616 | 1,974,882 | 22.7% |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 21,426,206 | 40,315,754 | 18,889,548 | 88.2% |
|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 438,546 | 644,949 | 206,403 | 47.1% |
|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 609,500 | 756,700 | 147,200 | 24.2% |
|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 12,689,774 | 15,237,604 | 2,547,830 | 20.1% |

| 구 분 | 2022 최종예산(A) | 2023예산(B) | 증감(B-A) | 변화율 |
|-------------------------------|-----------------|-----------|------------|--------|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 5,864,032 | 6,961,734 | 1,097,702 | 18.7% |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 2,980,773 | 3,337,747 | 356,974 | 12.0% |
|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 | | | |
|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3,731,976 | 2,831,463 | △900,513 | △24.1% |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 591,883 | 426,813 | △165,070 | △27.9% |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 371,256 | 265,844 | △105,412 | △28.4% |
| 노숙인 등 의료지원 | 4,677,303 | 3,264,086 | △1,413,217 | △30.2% |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별설명서 p.126)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1% 감액한 168억원이 편성되었음.

〈표〉 2023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 구 분 | 2022년 | | 2023예산(안) (B) | 증감 (B-A) | (B-A)*100/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x853,000) 18,999,619 | (x853,000) 18,999,619 | (x751,860) 16,884,844 | (xΔ101,140) Δ2,114,775 | (xΔ12) Δ11 |
| 출연금 | (x853,000) 18,999,619 | (x853,000) 18,999,619 | (x751,860) 16,884,844 | (xΔ101,140) Δ2,114,775 | (xΔ12) Δ11 |

- 사회서비스원 수입은 서울시 출연금 외 영업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년도 예산 편성안의 경우 서울시 출연금이 전체수입의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수입의 경우 영업수입(20.7%), 보조금 (10.6%), 기타 수입(0.4%)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연금을 포함한 총 세입예산안은 약 31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안)

(단위:천원)

| 세 입 | | | 세 출 | | |
|-----------------|------------|-----------|----------------|------------|------------|
| 구 분 | 예 산 안 | | 구 분 | 예 산 안 | |
| 계 | 31,895,733 | | 계 | 31,895,733 | |
| 영업수입 (20.7%) | 종합재가 | 3,578,809 | 인건비 (66.0%) | 본부 | 2,913,677 |
| | 주야간 | 712,854 | | 소속기관 | 16,756,477 |
| | 어린이집 | 2,319,191 | | | |

| 세 입 | | | 세 출 | | |
|----------------|-----------|------------|----------------------|-----------------|-----------|
| 구 분 | 예 산 안 | 구 분 | 예 산 안 | | |
| | 계 | 6,610,854 | 성과급 | 1,384,526 | |
| | | | 계 | 21,054,680 | |
| 출연금 (52.9%) | 본부 운영비 | 2,098,717 | 운영비 (9.5%) | 본부 | 3,045,917 |
| | 소속기관 운영 | 13,121,548 | | | |
| | 신규사업 등 | 2,816,095 | | | |
| | 계 | 16,884,844 | | | |
| 보조금 (10.6%) | 종합재가센터 | 9,752 | 정책사업 비 (23.4%) | 종합재가센터운영 | 3,673,633 |
| | 어린이집 | 3,376,809 | | 국공립시설운영 | 2,689,933 |
| | 주야간보호시설 | 1,080 | | 민간서비스기관지원 | 54,760 |
| | 계 | 3,387,641 | | 서비스 품질관리 | 322,000 |
| 기타수입 (0.4%) | 이자 | 20,000 | | 홍보 및 전산시스템 | 474,000 |
| | 기타 | 96,140 | | 긴급돌봄지원단운영 | 139,959 |
| | 계 | 116,140 | | 통합재가센터운영 | 77,715 |
| | | | | 종합재가센터 기능재정립 | 42,600 |
| 잉여금 (15.3%) | 집행잔액추정치 | 858,976 | | 계 | 7,474,600 |
| | 21년 내부유보금 | 4,037,278 | | 일반예비비 | 320,535 |
| | 계 | 4,896,254 | 예비비 (1.0%) | 계 | 320,535 |
| | | | | | |

- 사회서비스원은 ‘19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종합재가센터 운영 및 국공립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주야간보호 시설) 등의 수탁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 ‘21년 종합재가센터 12개소,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9개소 수탁(어린이집 7, 주야간보호 2개소) 이후 신규 확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재가센터 중 성동, 노원 2개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노원종합재가센터에서 운영하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정기간 만료(‘22.10.30.) 후 사업을 종료하고 성동종합재가센터에서 통합해 운영하기로 함.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음.
- 첫째,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수입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23년 기준 사회서비스원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21년부터 지속적으로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표〉 사회서비스원 전체 예산 대비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 '21 결산 | '22 현황 (22.10월 기준) | '23 예산 | '22년 대비 '23년 증감비율(%) |
|------------|--------|-----------------------|--------|-------------------------|
| 전체 재정예산(a) | 32,670 | 35,461 | 31,896 | △10.1 |
| 자체수입(b) | 8,497 | 9,753 | 9,998 | 2.5 |
| 사업수입 | 5,528 | 6,450 | 6,611 | 2.5 |
| 보조금 | 2,969 | 3,302 | 3,388 | 2.6 |
| 비율(b/a) | 26.0% | 27.5% | 31.3% | - |

-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수가 기준으로 운영되어 낮은 수익성과 공공의 경직성 문제로 독립채산제 구조에서 정상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²⁾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전체 수입예산에서 출연금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의 재정부담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재정구조의 개선을 촉구해 온 바 있음.

2) 김승연 외(2021).「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혁신 방안」. 서울연구원.

-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전부터 사회서비스 중복제공, 서비스 편차 및 서비스주체 간 갈등심화, 공공이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사회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며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간기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에서 기피하는 최중증장애인, 단시간 다회서비스, 다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민간기피사례 실적은 ‘22년 9월 기준 전체 이용자 수의 19%에 그치고 있는 미비한 상황임.

※ 적극개입사례 (민간곤란) 유형 구분

- 도전적 행동, 고강도, 일부 최중증(기저귀 케어, 와상 심각) 치매,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명 이상의 다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인서비스 제공
- 주거환경열악(서비스 제공 힘든 좁은 집, 위생 상태 심각 등)
- 단회기, 단시간 이용자 서비스 제공
- 단일 서비스로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등

〈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적극개입사례 (민간곤란) 실적

| 구분 | 2019년 (7~12월) | | 2020년 (1~12월) | | 2021년 (1~12월) | | 2022년 (1~9월) | | |
|-----------|------------------|-----------|------------------|-----------|------------------|-----------|-----------------|-----------|------|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
| 합계 | 27 | 9.4 | 97 | 12.1 | 176 | 11.2 | 280 | 19.9 | |
| 방문요양/방문목욕 | 36 | 19.4 | 20 | 11.5 | 60 | 14.9 | 105 | 28.2 | |
| 방문간호 | - | - | - | - | - | - | 5 | 23.8 | |
| 장애인활동지원 | 11 | 35.4 | 12 | 14.6 | 11 | 15.4 | 18 | 25.0 | |
| 돌봄 SOS | 노인 | 9 | 3.4 | 62 | 10.5 | 105 | 10.0 | 151 | 16.1 |
| | 장애인 | 0 | 0 | 3 | 11.1 | 0 | 0 | 1 | 11.1 |

| 구 분 | 2019년 (7~12월) | | 2020년 (1~12월) | | 2021년 (1~12월) | | 2022년 (1~9월) | |
|-----------|------------------|-----------|------------------|-----------|------------------|-----------|-----------------|-----------|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이용자수 (명) | 비율 (%) |
| 서비스 횟수(회) | 538 | | 7,021 | | 11,823 | | 13,719.0 | |
| 서비스 시간(h) | 1,768.5 | | 29,050 | | 35,658.5 | | 41,000.5 | |

* 출처 : 2022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지원을 통해 여타 민간 직접서비스제공 기관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만큼, 민간기피사례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둘째,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으로, ‘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혁신 지원강화” 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컨설팅이나 시설안전점검, 대체인력지원사업 등의 민간 지원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 소극적인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³⁾
- 셋째, 서울시 외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 중 일부는 통·폐합이 진행⁴⁾되는 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 등을 포함해 사회서비스원이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운영구조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편성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3) 김승연 외(2021).「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혁신 방안」. 서울연구원.

4) 22년 10월 기준 대구, 울산의 경우 통폐합이 결정된 상태임.

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2. 안심소득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p.157, 162, 166)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22년 11월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23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와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에게 추가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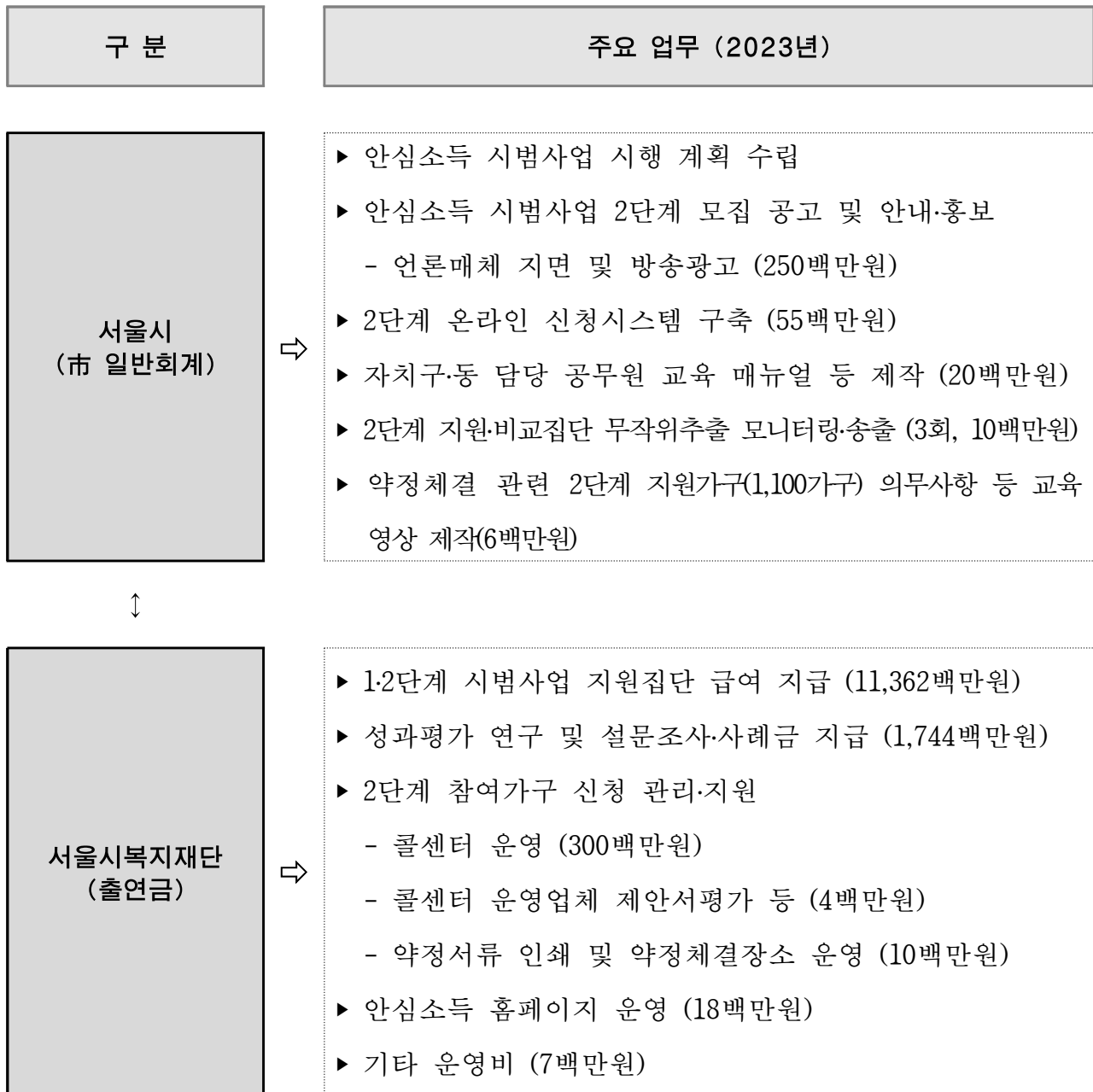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기 추진중) + 500가구(23.7월 지급 개시 예정)
: 총 1,000가구
- 중위소득 50~85% 600가구 (23.7월 지급 개시 예정)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해당사업은 ‘22년 본예산 편성시에는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추진되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을 신설하고 2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표〉 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편성내역

| 과목구분 | 편성액 | 주요 산출내역 |
|-------|-----------|----------------------------------------------------------------------------------------------|
| 합계 | | 237,000천원 |
| 사무관리비 | 87,000천원 | ·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운영 12,000천원 · 회의 및 교육자료 인쇄비 : 5,000천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 홍보비 : 70,000천원 |
| 행사운영비 | 150,000천원 | · 국제포럼 개최준비 : 70,000천원 · 국제포럼 개최 홍보 : 80,000천원 |

- 또한 ‘22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정책실에 안심소득추진과를 신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음.



[그림]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간 업무 분담체계

- ‘23년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22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한 사업보다 약 10억이 늘어난 12억 7,740만원⁵⁾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년 안심소득추진과 사업편성 현황

| 사업명 | 과목구분 | 편성액 | 편성내용 |
|-------------------------------|-----------|-----------|------------------------------------------------------------------------------------------------------------------------------|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 합계 | | 346,200천원 |
| | 사무관리비 | 341,200천원 | · 연구자문단 운영 : 58,200천원 · 소득보장정책자문단 운영 : 13,600천원 · 정책토론회 : 144,400천원 · 기타 홍보 : 110,000천원 · 연구관리비 : 15,000천원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천원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천원 |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선정 추진 | 합계 | | 346,200천원 |
| | 사무관리비 | 341,200천원 |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 55,000천원 · 자치구·동 업무 교육 자료 제작 : 20,000천원 · 2단계 모집·선정 관리비 : 16,200천원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홍보 : 250,000천원 |
| | 시책업무추진비 | 5,000천원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천원 |
|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 합계 | | 585,000천원 |
| | 사무관리비 | 100,000천원 | · 국제 소득보장 네트워크 구축 홍보 : 100,000천원 |
| | 행사운영비 | 480,000천원 | · 국제포럼 개최 : 480,000천원 |
| | 시책업무추진비 | 5,000천원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천원 |

5) 안심소득추진과 총 3개 사업, 안심소득 지급금액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별도편성

- ‘23년도는 시정사업인 안심소득 사업이 2단계 추진을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추진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전체 운영사업비 12억 가운데 4억 6천만원을 홍보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년 안심소득 세부사업별 홍보예산 편성내역

| 사 업 명 | 홍보 예산액 | 주요 내용 |
|------------------------|--------|---------------------------------------|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 110백만원 | - 정책 홍보물·홍보영상·백서 등 제작 |
|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선정 추진 | 250백만원 | - 2단계 모집 등 집중 홍보 |
|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 100백만원 | - 국제 소득보장 네트워크 구축 홍보비(사무관리비) : 100백만원 |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23년도에 1회의 국제포럼 외에도 총 4번의 정책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토론회 역시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보았을 때 전체 예산에서 홍보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됨.

〈표〉 ‘23년 안심소득 정책토론회 예산 편성내역

| 구 분 | 금액 | 산출내역 |
|--------------|-----------|------------------|
| 합계 | 144,400천원 | |
| 토론회 수당 | 7,200천원 | · 300,000원*6명*4회 |
| 자료제작 등 회의운영비 | 2,000천원 | · 500,000원*4회 |
| 토론회 운영 | 120,000천원 | · 30,000,000원*4회 |
| 영상촬영 | 8,000천원 | · 2,000,000원*4회 |
| 보고서 발간 | 7,200천원 | · 3,600,000원*2회 |

- 안심소득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심소득은 민선 8기 주요 시정사업의 하나로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안심소득 사업에만 약 5억원의 홍보성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하겠음.
- 또한, 안심소득 홍보의 시기적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음. 안심소득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이미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된 바가 있음. 사업의 사전단계도 아닌 사업시작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홍보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 (사업별설명서 p.247)

- 해당 사업은 '22년까지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⁶⁾와 50플러스재단에서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을 별도 독립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및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은 2017년 10개 자치구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추진되었음. 사업의 주요 경과를 다음과 같음.

6) '22년 8월 서울시 조직개편 후 평생교육과에서 추진

〈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주요 경과

| 연도 | 참여구 | 참여동 | 참여인원 (명) | 활동기간 (개월) | 모니터링 가구수 | 가구방문 건수 (건) | 전화상담 건수 (건) | 사업예산(천 원) |
|------|-----|-----|-------------|--------------|-------------|----------------|----------------|--------------|
| 2017 | 10 | 68 | 341 | 6 | 16,267 | 58,748 | 48,280 | 497,960 |
| 2018 | 7 | 78 | 275 | 6 | 5,779 | 65,658 | 42,317 | 544,180 |
| 2019 | 10 | 135 | 415 | 6 | 8,041 | 62,744 | 47,605 | 630,800 |
| 2020 | 15 | 164 | 498 | 5 | 58,250 | 32,234 | 181,024 | 697,069 |
| 2021 | 25 | 195 | 650 | 10 | 59,376 | 69,544 | 360,397 | 1,509,827 |

- 금년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800명이었던 활동인원을 1차 추경을 통해 1,200명으로 확대추진한 바 있음.

〈표〉 '22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예산 편성현황

| 구 분 | 금액 | 산출내역 |
|-------------------|--------------|------------------------------------------------------------------------------------------------------------------|
| 합계 | 2,254,000천원 | |
| 본예산 | 1,620,000 천원 | · 활동비 : 1,584,000천원 - 220,000원(1인)*800명*9개월=1,584,000천원 · 운영비 36,000천원 - 45,000원(1인)*800명*1회 = 36,000천원 |
| 1차 추경 ('22.4월) | 634,000천원 | · 활동비 : 616,000천원 - 220,000원(1인)*400명*7개월=616,000천원 · 운영비 : 18,000천원 - 45,000원(1인)*400명*1회 = 18,000천원 |

- 본 사업은 취약계층 및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및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의 변경, 해당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이 아닌 별도 독립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기존 사업과 수행기관, 방식, 활동인력에 대한 지급금액 등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기존 보람일자리 사업은 은퇴 후 서울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공헌활동의 성격으로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따라서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대상을 만 40~67세 서울시민으로 한정하였으며, 활동비 역시 활동실비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참여자에게 18천원을 지급하고, 월 48시간을 다 채워 활동했을 때 22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에는 교통비 (3천원) 및 실제 활동시간 1시간당 2천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2022년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2. 4 ~ 12월 (9개월)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정기적 모니터링
 -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등
- 참여대상 : 지역을 잘 아는 만 40~67세 서울시 거주 주민
- 모집인원 : 800명
- 활동처 : 25개 자치구(425개 동) 참여자 거주 지역
- 활동조건 : 월 48시간 내 / 주 3일 / 1일 4시간 이내
 - 지원내용 : 1인당 활동비 월 220천원 / 상해보험료·교육비 지원

- 집행기관에서는 독립사업으로 편성하면서 활동인원 1인당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구 분 | 기 존 | | '23년도 추진안 |
|-----|------------|---|------------|
| 활동비 | 월 220,000원 | ▷ | 월 462,000원 |
| 운영비 | 연 45,000원 | | 연 240,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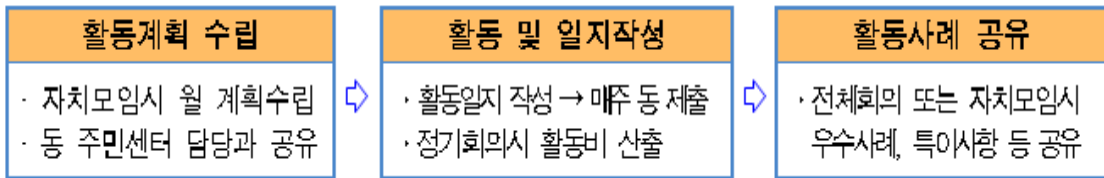
〔그림〕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비 및 운영비 변동내역

- 집행기관에서는 활동비 증액에 대해, 기존 우리동네돌봄단 시간당 활동비가 사업별 활동실비 기준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최저시급을 고려해 활동실비의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음.
- 운영비의 경우 연 1회였던 교육을 6회로 늘렸고, 월 1회의 간담회비와 활동에 필요한 우리동네돌봄단 명찰, 조끼 등 활동용품비를 포함해 대폭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남.

〈표〉 우리동네돌봄단 1인당 운영비 산출 내역

| 구 분 | 산출내역 | 비고 |
|-----------|------------------|------------------------|
| 총합 | 240,000원 | |
| 상해보험비 | 40,000원 | |
| 교육실비 | 15,000원*6회 | |
| 간담회비 | 8,000원*12회 (월1회) | 월 1회 자치모임 추진 |
| 활동운영 보조경비 | 14,000원 | 우리동네돌봄단 명찰, 조끼 등 활동용품비 |

- 현재 우리동네돌봄단은 고독사 위험가구를 중점으로 전화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확인을 하고 필요 시 사회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요청을 하는 등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업무의 보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동네돌봄단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며,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활동 수행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자치모임에 참석해 사례를 공유하는 형태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그림]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방법

- 집행기관에서는 ‘23년부터는 최저시급을 고려해 활동비를 인상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사업이 보람일자리로 편성되어 운영될 때와 역할구분, 관리방법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활동비만을 인상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기존 보람일자리 사업에서 활동비는 급여성격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었음.
- 본 사업이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복지정책실의 공모사업으로 편성되어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계획 수립, 모집공고 등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형태의 특성상 1~3월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직접추진을 통해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연중 돌봄체계가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사업은 독립사업으로 편성하면서 활동비와 운영비를 대폭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될 때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 활동 프로세스,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설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사업별설명서 p.628)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어르신장기요양 수요에 맞춰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신규사업으로 29억 3천4백만원이 편성됨.

〈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예산 명세

(단위: 천원, %)

| 구분 | 2022년 | | 2023년 예산(안) | 증감(B-A) | (B-A)*100 / A |
|----------|--------|---------|----------------|----------------|---------------|
| | 본예산 | 최종예산(A) | | | |
| 계 | (x-) 0 | (x-) 0 | (x-) 2,933,500 | (x-) 2,933,500 | (x-) 100 |
| 사무관리비 | (x-) 0 | (x-) 0 | (x-) 3,500 | (x-) 3,500 | (x-) 100 |
| 자치단체자본보조 | (x-) 0 | (x-) 0 | (x-) 2,930,000 | (x-) 2,930,000 | (x-) 100 |

〈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산출 근거

| 과목구분 | 2022년 본예산 | 2023년 예산(안) |
|-------|-----------|-----------------------------------------------------------------|
| 사무관리비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 설명회·자문회의 등 - 7명*5회*100,000원 = 3,500천원 |

| 과목구분 | 2022년 본예산 | 2023년 예산(안) |
|----------|------------------------------------------------------------------------------------------------------|------------------------------------------------------|
| | 증감사유 | |
| | 〈증 3,500천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관련 설명회 자문회의 등 운영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293,000,000원*10개소 =2,930,000천원 |
| | 증감사유 | |
| | 〈증 2,930,000천원〉 ○생활속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신규사업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30년까지 매년 10개소 확충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중 하나로 5명 이상 9인 이하의 수급자가 거주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임.
- 「노인복지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음.⁷⁾
- 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과는 달리 가정에 가까운 분위기이며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상 가정적 환경, 즉 소규모 시설에서의 케어가 효과적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생활시설의 유형이라 할수 있겠음. ⁸⁾

7)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2011. 6. 7.>

8) 2009, 노인 그룹홈의 운영과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 전주시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4), pp841-855

- 현재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다르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음.

<표> 서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 구분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⁴⁾ | |
|-----------|-----------------------------------------------|-------------------------------------------------------------|-------------------------------------------------------------------------------------------------------|----------|
| 입소자수 | • 5~9명 | • 5~9명 | • 10명 이상 | |
| 입소대상자 |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노인 | • 장기요양급여자 중 시설급여대상자 | | |
| 면적 기준 | 1실 사용자수 | • 4인 이하 | | |
| | 1인당 연면적 | • 15.9㎡ | • 20.5㎡ | • 23.6㎡ |
| | 1인당 침실면적 | • 5㎡이상 | • 6.6㎡이상 | • 6.6㎡이상 |
| 시설, 설비 기준 | •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 침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세면장 및 목욕실(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 |
| 직원 배치기준 | • 시설장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4.5명당 1명 이상) | •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 •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물리(직업)치료사 | |

- ‘22년 기준 서울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69개소로 정원 2,388명 대비 현원 2,160명으로 충족률은 90.4%로 확인됨.

- 시설수는 <표> 와 같이 마포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없고 자치구별 최저 1개소에서 최대 39개소로 차이가 있고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요 등 자치구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하겠음.

〈표〉 서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단위:개소,명 %)

| 자치구 | 시설수 | 정원 | 현원 | 총족률 | 자치구 | 시설수 | 정원 | 현원 | 총족률 |
|------|-----|-------|-------|-------|------|-----|-----|-----|-------|
| 계 | 168 | 1,494 | 1,357 | | 계 | 101 | 894 | 803 | |
| 종로구 | 1 | 9 | 9 | 100% | 마포구 | - | - | - | - |
| 중구 | 1 | 9 | 7 | 77.8% | 양천구 | 5 | 45 | 41 | 91.1% |
| 용산구 | 1 | 9 | 8 | 88.9% | 강서구 | 13 | 115 | 96 | 83.5% |
| 성동구 | 4 | 36 | 35 | 97.2% | 구로구 | 5 | 43 | 36 | 84% |
| 광진구 | 12 | 108 | 97 | 90% | 금천구 | 11 | 99 | 90 | 91% |
| 동대문구 | 21 | 189 | 161 | 85.1% | 영등포구 | 15 | 125 | 118 | 94.4% |
| 중랑구 | 39 | 351 | 329 | 93.8% | 동작구 | 4 | 36 | 33 | 91.6% |
| 성북구 | 5 | 42 | 38 | 90.5% | 관악구 | 19 | 171 | 166 | 97% |
| 강북구 | 23 | 203 | 181 | 89.1% | 서초구 | 1 | 9 | 9 | 100% |
| 도봉구 | 33 | 292 | 277 | 94.9% | 강남구 | 3 | 26 | 25 | 96.1% |
| 노원구 | 17 | 151 | 133 | 88% | 송파구 | 12 | 108 | 98 | 90.8% |
| 서대문구 | 3 | 24 | 16 | 66.7% | 강동구 | 13 | 117 | 91 | 77.8% |
| 은평구 | 8 | 71 | 66 | 93% | | | | | |

출처 : 국민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기관기관 시설수, 정원 및 현원수로 발췌한 자료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주체는 개인운영시설이 237개소로 전체 269개소 대비 88.1%이며, 법인은 29개소 10.8% , 공공기관 운영시설은 3개소인 1.1%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자치구별 시설수에 따른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충족률 또한 최대 100%에서 최저 66.7%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아래 <표> 와 같이 총 225개소로 공공시설 시립 및 구립이 34개소, 법인이 50개소, 개인운영시설이 141개소로 나타남. 노인요양시설은 10인 이상 시설로서 많은 예산투입과 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자본, 최소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음.

<표> 서울 운영주체별 노인요양시설

(단위:개소)

| 총 계 | | 운영주체별 노인요양시설 | | | | |
|-----|--------|--------------|-------|-------|-------|-------|
| | | 소 계 | 시 립 | 구 립 | 법 인 | 개 인 |
| 개 소 | 225 | 84 | 9 | 25 | 50 | 141 |
| 정 원 | 13,803 | 7,373 | 1,615 | 1,551 | 4,207 | 6,430 |

출처 : 국민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기관기관 시설수, 정원 및 현원수로 발췌한 자료임.

- ‘22년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3개소로 <표> 와 같이 강남구, 종로구, 광진구가 구립으로 운영 중에 있음.

〈표〉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연번 | 장기요양기관 | 급여종류 | 정원 | 현원 | 비고 |
|----|------------|---------------------|----|----|----|
| 1 | 구립대치노인요양센터 | 치매전담형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8 | 8 | |
| 2 | 청운실버센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 | 9 | |
| 3 | 광진노인보호센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 | 9 | |

출처 : 국민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기관

- 최근 5년간 노인인구 및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증가 추세이나 입소 대기자는 돌봄서비스 품질 등 공공요양시설 신뢰도 및 선호도가 높아 공공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성은 필요하다 하겠음.
- 집행기관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23년 10개소 확충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음. 확충방법으로는 기존 동청사 및 경로당 등 공공건물 활용형이나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병설형, 공동주택, 빌라, 상가 등 민간건물 임대등을 통해 시설당 개보수비용으로 개소당 293,000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 도시의 외곽 중심으로 요양시설이 분포하여 요양시설 접근성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이 살던 곳과 가깝거나 원 가족과 가까운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가족과의 교류가 원활하고 집과 같은 편안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필요하다 하겠음.
- 하지만 현재 10개소 확충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운영방법 또한 구립 및 시립 등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 편차없이 공급의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음. 행정구역상의 수요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근지역 거주자의 시설이용, 자녀 거주지로서의 이동을 통한 시설이용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등도 고려의 대상이라 사료됨.

5.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별설명서 p.644)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등록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환급금을 위해 시비사업으로 41억 7천1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예산 명세

(단위:천원)

| 구 분 | 2022년 | | 2023예산(안) (B) | 증감 (B-A) | (B-A)*100/ 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x-) 0 | (x-) 577,265 | (x-) 4,170,634 | (x-) 3,593,369 | (x-) 622 |
| 사무관리비 | (x-) 0 | (x-) 3,000 | (x-) 50,860 | (x-) 47,860 | (x-) 1,595 |
| 공공운영비 | (x-) 0 | (x-) 0 | (x-) 69,170 | (x-) 69,170 | (x-) 100 |
| 전산개발비 | (x-) 0 | (x-) 574,265 | (x-) 0 | (x-) Δ574,265 | (x-) Δ100 |
| 사회복지사업보조 | (x-) 0 | (x-) 0 | (x-) 4,050,604 | (x-) 4,050,604 | (x-) 100 |

- 동 사업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6세이상 장애인에게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전액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2년 2월말 기준 서울시 장애인은 약 392천명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4.1%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34천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⁹⁾

▶ 장애인 현황 : 391,378명 (중증 147,393명, 경증 243,985명)

| 지체 | 청각 | 시각 | 뇌병변 | 지적 | 신장 | 기타 |
|----------|---------|---------|---------|---------|---------|---------|
| 167,240명 | 59,943명 | 41,113명 | 40,079명 | 27,384명 | 18,326명 | 37,293명 |
| 42.7% | 15.3% | 10.5% | 10.2% | 7.0% | 4.7% | 9.6% |

* 기타 : 정신(4.2%), 자폐성(1.8%), 언어(0.9%), 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3.6%)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이 지역 내(시·도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2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⁰⁾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규모는 전체 이용객대비 1.8% 수준이며, 이중 버스 이용객은 지하철의 21.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¹¹⁾

| 구분 | 전체 이용건수 | 장애인 이용건수 | 비고 |
|-----|----------|-----------------|------------|
| 계 | 3,395백만건 | 60,258천건(1.78%) | |
| 버스 | 1,479백만건 | 10,770천건(0.73%) | 지하철의 21.8% |
| 지하철 | 1,916백만건 | 49,488천건(2.6%) | |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 25년까지 시내버스 저상운행 노선에 저상버스 조기도입 및 가로변 무장애정류장 설치 및 시각 장애인 승하차 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9) 장애인복지정책과-21769(2022.4.18.).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8.19.). “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

11)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관련내용

-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 및 이동권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장애인 버스요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도의 교통비 지원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타 시·도 교통비 지원내역

| 구 분 | 충청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 국가보훈처 |
|---------|------------|------------|---------------------|------------|
| 사업대상 | 장애인·노인·유공자 | 장애인·노인·유공자 | 13~23세 청소년 | 애국지사·상이유공자 |
| 사업규모 | 19만명 | 10만명 | 43만명 | 12만명 |
| 사업범위 | 버스 | 버스 | 경기버스 및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 | 버스 |
| 지원내용 | 이용요금 전액 | 이용요금 전액 | 연 최대 12만원 | 이용요금 전액 |
| 지원방법 | 무임 교통카드 | 무임 교통카드 | 선결제 후 환급 | 무임 복지카드 |
| '21년 예산 | 220억원 | 110억원 | 230억원 | 84억원 |

- 버스요금 무료화를 처음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8.1월부터 장애인 및 노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남도도 '20.7월부터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유공자에 대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요금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국가보훈처에서도 버스요금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었음.
- 집행기관에서는 23년 예산 편성을 통해 버스요금 지원시스템 구축 및 버스요금 지원 신청 등 사전절차 완료후 7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 과목구분 | 2022년 본예산 | 2023년 예산(안) |
|----------|---------------------------------------------------------|---------------------------------------------------------------|
| 사무관리비 | ○ 평가위원 심의수당 3,000,000원 = 3,000천원 |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4,000,000원 = 4,000천원 |
| | | ○ 장애인 버스요금 환급데이터 추출비 지급 7,810,000원*6개월 = 46,860천원 |
| | 증감사유 | |
| | ○ '23.7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교육비, 환급데이터 추출비 편성 | |
| 공공운영비 | |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 36,410천원 |
| | | - 상주 유지보수 인력비 36,410,000원 = 36,410천원 |
| | | ○ 계좌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환급내역 문자전송 234,000명*140원 = 32,760천원 |
| | 증감사유 | |
| | | ○ '23.7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상주 유지보수 인력비, 인증문자 전송경비 편성 |
| 사회복지사업보조 | | ○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환급금 873원*4,639,866건 = 4,050,604천원 |
| | 증감사유 | |
| | ○ '23.7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환급금 편성 | |

-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기관에서는 장애인 사용 버스요금의 정산 및 환급업무 처리, 서울시 장애인 현황(전입·전출 등) 및 카드 발급현황 등 변동사항을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 관리하고, 타 시스템(티머니, 신한카드 등)과의 연계로 버스요금 환급, 정산처리를 자동화하고자 하고 있음.

〈표〉 메뉴구성(안)

| 사용자(장애인) 측면 | 관리자(서울시) 측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가입/정보 변경 · 버스요금 지원 신청 (최초 1회) · 버스요금 환급(지원) 내역 확인 · 게시판 이용 (공지사항/Q&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관리 · 교통카드 사용내역, 지원/환급 내역 · 지원현황 및 예산 관리, 이용 통계 · 게시판 관리 |

- 집행기관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 ‘23년 7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

| |
|------------------------------------------------------------------------------------------------------------------------------------------------------------------------------------------------------------------------------------------------------------------------------------------------------------------------------------------------------------------------------------------------------------------------|
| <p>※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경우 월 단위로 정산하여 실비 요금 환급 ○ 사업범위 :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환승시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약 39만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금액 : 이용금액 전액 ※타 사업과 중복시 차감액 지원 ○ 지원방법 : 장애인 선결제 후 시와 카드사간 정산 또는 장애인에게 환급 ○ 시행시기 : 2023년 7월 |
|------------------------------------------------------------------------------------------------------------------------------------------------------------------------------------------------------------------------------------------------------------------------------------------------------------------------------------------------------------------------------------------------------------------------|

- 이를 위해 복지정책실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정보화 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¹²⁾를 각각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수단으로 〈별첨〉과 같이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전용임차택시 및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등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승용차, 일반버스, 저상버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콜택시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장

12)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219(2022.7.8.), 서울특별시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음.13)



- 집행기관은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7월 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여겨짐.
- 복지정책실에서는 시스템 구축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 추계, 지원절차를 포함한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시 지원수단 현황

| 구 분 | 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 |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 |
|------|---------------|---------------|--------------------------|-------------------|
|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전용 입차택시 | 장애인 복지콜 | 바우처택시 |
| 근거법령 | 교통약자법 | | 장애인복지법 | |
| 운영기관 | 택시정책과(서울시설공단) | |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 택시정책과 (서울시설공단) |

13) 중앙선데이.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장애인 인권]263만 장애인들 '이동·선택·이해할 권리' 못 누리...평범한 일상조차 '고난의 행군' 2022.4.16.

| 구 분 | 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 |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 | |
|----------|----------------------------------------------------------------------------------|--------------------------|-------------------------------------------------------------------------|----------------------------------------------------|--------|
|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 장애인 복지콜 | 바우처택시 | |
|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시각,신장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콜 또는 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
| 운영규모 | 특수차량 622대 (특장차 619대, 미니버스 1대, 전세버스 2대) | 임차택시 80대 | 승합차량 158대 (비 특장차) | 콜택시 12,807대 (나비콜, 국민캡, 마카롱택시) | |
| 운영인력 | 총 792명(관리직 30/ 상담원 38/ 운전원 724) | | 총 210명 (운전원 175 / 상담원 16 / 관리직 19) ※ 보람일자리 운전원 79, 바우처택시 기사 별도 | | |
| 이용방법 | 서울시설공단 접수·처리 | | 생활이동지원센터 접수·처리 | 나비콜·국민캡·마카롱 콜센터 접수·처리 | |
| 등록인원 | 42,139명 | | 22,981명 | 12,935명 ※장콜이용자 4,747명 | |
| 탑승건수(연) | 1,068,993건 | 151,586건 | 368,057건 | 496,253건 | |
|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요금은 이용자 전액 부담) | | | 요금 지원률 75%, 본인부담 25% | |
| 이용횟수 | 제한 없음 | | 시각 : 제한 없음 신장 : 1일 2회(병원) | 1일 4회, 월 40회 | |
| 운행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 | | |
| 운행지역 | 서울시계 및 인접한 12개시, 인천국제공항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 | 서울시계 외 구분 없이 운행 | |
| 대기시간 | 일평균 32분 | | 일평균 39분 | 바우처택시 확인불가 | |
| 요금 비교 | 0~5km | 1,500원 | 1,500원 | 1,500원 | 2,000원 |
| | 9~10 km | 2,900원 | 2,900원 | 2,900원 | 2,500원 |
| | 19~20 km | 3,600원 | 3,600원 | 3,600원 | 4,500원 |
| '21년 사업비 | 61,212백만원 | 5,903백만원 | 13,348백만원 | 5,000백만원 | |

다.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 현황

- 202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복지정책실에서 불용률이 20%이상인 사업은 전체 220개 사업 가운데 65개로 나타났으며, 그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022회계연도 복지정책실 불용률 20%이상 사업 현황 (2022.10.30. 기준)

(단위: 천원, %)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불용액 | 불용률 |
|----|-------|--------------------------|------------|------------|--------|
| 1 | 복지정책과 |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 1,168,500 | 328,896 | 28.1% |
| 2 | 복지정책과 |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31,328,600 | 15,936,743 | 50.9% |
| 3 |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지원 | 4,490,400 | 1,227,940 | 27.3% |
| 4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 1,439,000 | 353,400 | 24.6% |
| 5 | 복지정책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 15,781,772 | 3,775,688 | 23.9% |
| 6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 | 200,000 | 68,000 | 34.0% |
| 7 | 복지정책과 |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 120,000 | 120,000 | 100.0% |
| 8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 8,149,801 | 1,859,530 | 22.8% |
| 9 | 복지정책과 |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 2,819,126 | 902,039 | 32.0% |
| 10 | 복지정책과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483,937 | 319,845 | 66.1% |
| 11 | 복지정책과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 3,601,508 | 933,306 | 25.9% |
| 12 | 복지정책과 |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 440,000 | 200,000 | 45.5% |
| 13 | 복지정책과 |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 51,958,346 | 11,460,013 | 22.1% |
| 14 |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 547,866 | 238,129 | 43.5% |
| 15 | 복지정책과 | 기본경비 | 271,522 | 85,880 | 31.6% |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불용액 | 불용률 |
|----|----------|-----------------------------|-------------|------------|--------|
| 16 | 복지정책과 | 국고보조금 반환 | 2,580,227 | 2,580,227 | 100.0% |
| 17 | 안심소득추진과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 237,000 | 186,894 | 78.9% |
| 18 | 안심돌봄복지과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2,972,511 | 724,695 | 24.4% |
| 19 | 안심돌봄복지과 | 긴급복지지원사업 | 40,654,500 | 10,500,000 | 25.8% |
| 20 | 안심돌봄복지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 13,000 | 13,000 | 100.0% |
| 21 | 안심돌봄복지과 |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 250,000 | 125,000 | 50.0% |
| 22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10,358,262 | 3,405,889 | 32.9% |
| 23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 21,444,357 | 9,591,221 | 44.7% |
| 24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 5,625,522 | 1,222,775 | 21.7% |
| 25 | 어르신복지과 | 노인지원주택 운영 | 936,403 | 275,054 | 29.4% |
| 26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놀이터 조성 | 600,000 | 600,000 | 100.0% |
| 27 | 어르신복지과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 46,784,587 | 21,567,848 | 46.1% |
| 28 | 어르신복지과 | 기본경비 | 77,865 | 19,165 | 24.6% |
| 29 | 장애인복지정책과 | 탈시설 협치 추진 | 1,391,600 | 290,000 | 20.8% |
| 30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110,613,480 | 22,974,706 | 20.8% |
| 31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 45,200 | 15,343 | 33.9% |
| 32 | 장애인복지정책과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국비) | 573,698 | 209,094 | 36.4% |
| 33 | 장애인복지정책과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 1,822,000 | 600,000 | 32.9% |
| 34 | 장애인복지정책과 |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 16,730,635 | 8,365,317 | 50.0% |
| 35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 78,000 | 37,286 | 47.8% |
| 36 |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 574,300 | 158,200 | 27.5% |
| 37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 1,421,930 | 898,108 | 63.2% |
| 38 | 장애인복지정책과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430,800 | 430,800 | 100.0% |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불용액 | 불용률 |
|----|----------|-------------------------------|------------|-----------|--------|
| 39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577,265 | 574,265 | 99.5% |
| 40 | 장애인복지정책과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1,142,000 | 903,353 | 79.1% |
| 41 |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출금(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 63,034 | 27,294 | 43.3% |
| 42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 1,901,831 | 400,399 | 21.1% |
| 43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 100,000 | 100,000 | 100.0% |
| 44 | 장애인자립지원과 | 발달장애인사서보조 지원사업 | 783,624 | 169,960 | 21.7% |
| 45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수당-차상위 등 | 11,415,814 | 2,801,882 | 24.5% |
| 46 |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15,552,000 | 3,376,560 | 21.7% |
| 47 | 장애인자립지원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 232,300 | 83,918 | 36.1% |
| 48 |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 278,860 | 103,457 | 37.1% |
| 49 | 장애인자립지원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86,200 | 77,200 | 41.5% |
| 50 | 장애인자립지원과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44,000 | 31,000 | 21.5% |
| 51 | 장애인자립지원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4,947,193 | 5,672,374 | 37.9% |
| 52 | 장애인자립지원과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8,448,000 | 2,681,204 | 31.7% |
| 53 |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 6,263,945 | 5,027,112 | 80.3% |
| 54 | 장애인자립지원과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3,950,000 | 3,941,545 | 99.8% |
| 55 |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 1,182,000 | 1,093,885 | 92.5% |
| 56 | 장애인자립지원과 | 국고보조금 반환 | 5,097,110 | 4,614,815 | 90.5% |
| 57 | 장애인자립지원과 | 기본경비 | 42,637 | 9,009 | 21.1% |
| 58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출금 (장애인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 43,000 | 18,625 | 43.3% |
| 59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출금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7,301,466 | 5,789,711 | 79.3% |
| 60 | 장애인자립지원과 | 강동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1,865,000 | 932,000 | 50.0% |
| 61 | 자활지원과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당소 운영 지원) | 5,864,032 | 1,290,752 | 22.0% |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현액 | 불용액 | 불용률 |
|----|-------|-------------------|------------|-----------|-------|
| 62 | 자활지원과 | 노숙인 등 의료지원 | 4,677,303 | 2,538,133 | 54.3% |
| 63 | 자활지원과 |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 609,500 | 147,567 | 24.2% |
| 64 | 자활지원과 |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 10,159,110 | 2,868,530 | 28.2% |
| 65 | 자활지원과 | 국고보조금 반환 | 189,990 | 186,177 | 98.0% |

- 이 가운데 행사 개최 등으로 연말 집행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하고 12월 말 기준 20%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21개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022년 말 기준 20% 이상 예상사업 및 사유

(단위 : 천원, %)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불용추정률 | 사유 |
|----|----------|--------------------|------------|-------|-----------------------------------------------------------------------------------------------------------------------------------------------|
| 1 | 복지정책과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 3,601,508 | 25.9% | ○ 배정 요청 인원 대비 실제 인원 배치 미달 등으로 예산 집행 저조하며, 사회복지요원의 휴가사용 및 기관 재지정 등 발생 |
| 2 | 복지정책과 |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 440,000 | 45.5% | ○ 22년 4월 코로나19가 2급 전염병으로 지정,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격리시설 입소 지원이 중단되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코로나19 관련 돌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축소 및 예산집행 실적 저조 |
| 3 | 안심돌봄복지과 | 고독사 유품정리사업 | 250,000 | 50.0% | ○ 고독사는 발생지역·인원의 예측이 어려워 25개 자치구에 5백만원씩 지원하였고, 특수청소비 지원의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유가족 등의 동의를 필요하여 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음 ○ 향후 자치구 예산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집행을 제고 할 예정 |
| 4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 10,358,262 | 28.2% |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로 축소 교부된 국비만 전액 집행 예정 |
| 5 | 어르신복지과 | 노년지원주택 운영 | 936,403 | 29.4% | ○ '22년 추가 공급 예정 주택(43호)의 공급 취소로, 신규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사업비 미집행 |
| 6 | 장애인복지정책과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 1,822,000 | 32.9% | ○ 구로구비전센터('22.7월), 노원구비전센터('22.11월) 개소예정시기가 '23년으로 지연 |
| 7 | 장애인복지정책과 |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 16,730,635 | 50.0% | ○ 2월 착공 계획하였으나 8월에 착공(백석초 학부모 등의 공사반대로 이해설득기간 소요)하여 |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불용추정률 | 사유 |
|----|-----------|-----------------------------|------------|--------|--------------------------------------------------------------------------|
| | 책과 | | | | '23년 명시이월 |
| 8 | 장애인 복지정책과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 1,421,930 | 58.2% |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일 사용 선호 |
| 9 | 장애인 복지정책과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430,800 | 72.1% | ○ '22년 2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사업착수 지연에 따라 불용액 발생 |
| 10 | 장애인 복지정책과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577,265 | 27.8% | ○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 준공이 '23년에 완료됨에 따라 잔여 계약금 160백만원 사고이월 |
| 11 | 장애인 복지정책과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 1,142,000 | 37.3% | ○ LH와 협약체결으로 인근 시세 30%의 가격으로 주택보증을 지원하여 소요액 감소 |
| 12 | 장애인 복지정책과 | 전출금(장애인이 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 63,034 | 22.7% | ○ 상수도사업본부 추계예산 대비 실제 감면 정산액 차이 |
| 13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86,200 | 25.9% | ○ 보건복지부 과다 내시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신청자 감소 |
| 14 | 장애인 자립지원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4,947,193 | 32.8% | ○ 복지부 감액 변경내시(22.7월) 미반영 ○ 사업집행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복지부 과다내시로 불용액 발생 |
| 15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8,448,000 | 26.0% | ○ 사업 집행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복지부 과다내시로 불용액 발생 |
| 16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애인 도예전수 일자리 창출 | 1,000,000 | 100.0% | ○ 4차에 걸쳐 공모 추진하였으나, 적격자 없음 |
| 17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시립서대문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 6,263,945 | 39.0% | ○ 지반공사 공기 연장으로 시설비 집행시기 미도래 |
| 18 | 장애인 자립지원과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3,950,000 | 80.0% | ○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설계비 및 부대비 집행시기 미도래 |
| 19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 1,182,000 | 69.6% | ○ 공사발주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
| 20 | 장애인 자립지원과 | 전출금(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7,301,466 | 57.1% | ○ 예산 편성시 대상가구수가 기초수급자 등 기존감면대상자 중복으로 제외되면서 대상가구수가 감소되어 불용액 발생 |
| 21 | 자활지원과 | 노숙인 등 의료지원 | 4,677,303 | 28.3% | ○ 노숙인 수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 등 진료 의뢰 건수 감소 |

- 이 가운데 고독사 유품정리사업의 경우 50%의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사업은 시민참여제안사업으로 편성되어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임. 지원 내용은 고독사 발생가구를 대상으로 특수청소(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발생지역 인원의 예측이 어려워 25개 자치구에 5백만원씩 일괄로 교부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집주인과 유가족 동의를 받기 어려워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라는데서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Ⅲ.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 총괄검토

- 복지정책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각각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음.
-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예정액은 796억 2천 7백만원으로 ‘23년도에는 기금사업을 통해 총 652억 5천1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음.

〈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 기 금 명 | 2022년 말 조성액 ① | 2023년도 조성계획 | | | 2023년 말 조성액 ⑤ = ① + ④ | |
|------------------|---------------------|-------------|--------|-----------------|-----------------------------|--------|
| | | 수입 ② | 지출 ③ | 증감 ④ = ② - ③ | | |
| 총 계 | 81,866 | 63,012 | 65,251 | △2,239 | 79,627 | |
| 사회 복지 기금 | 소 계 | 41,611 | 5,216 | 8,626 | △3,410 | 38,201 |
| | 노인복지계정 | 12,368 | 861 | 309 | 552 | 12,920 |
| | 장애인복지계정 | 20,983 | 3,154 | 7,441 | △4,287 | 16,696 |
| | 자활계정 | 8,260 | 1,201 | 876 | 325 | 8,585 |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40,255 | 57,796 | 56,625 | 1,171 | 41,426 | |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나. 기금별 검토

1. 사회복지기금

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되는 것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수입예상액은 17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항 목 | 수 입 | | 증 감 |
|-------------|-----------|---------------|----------|
| | 수입액 | 계 획 전년도수입액 | |
| 합 계 | 1,738,987 | 1,781,976 | -42,989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0 | 0 | 0 |
| 예탁금원금회수 | 0 | 0 | 0 |
| 예치금회수 | 877,641 | 1,337,116 | -459,475 |
| 예수금 | 0 | 0 | 0 |
| 이자수입 | 586,897 | 175,860 | 411,037 |
| 기타수입 | 274,449 | 269,000 | 5,449 |

-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가 2억 5백만원(전년대비 △5억 9천5백만원), 용자성사업비 1억원(전년 동일)이며 예치금은 14억 3천만원(전년대비 5억 5천3백만원 증)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 항 목 | 지 출 계 획 | | 증 감 |
|---------|-----------|-----------|----------|
| | 지출액 | 전년도지출액 | |
| 합 계 | 1,738,987 | 1,781,976 | △42,989 |
| 비용자성사업비 | 205,800 | 801,335 | △595,535 |
| 용자성사업비 | 100,000 | 100,000 | 0 |
| 기본경비 | 3,000 | 3,000 | 0 |
| 예탁금 | 0 | 0 | 0 |
| 예치금 | 1,430,187 | 877,641 | 552,546 |

- 집행기관에서는 긴급한 재정소요가 없어 탄력적인 운용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은 기금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비용자성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 10개의 비용자성 사업 가운데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경로효친 행사지원, 어르신 지도자 육성, 어르신 문화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 자원봉사 사업은 사업을 종료할 계획에 있음.

〈표〉 '23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명 | '22년 본예산(A) | '23년 예산(안)(B) | 증감액 (B-A) | 비 고 |
|-----------|----------------|------------------|--------------|-----------------------------------|
| 총 계 | 1,781,976 | 1,738,987 | △42,989 | |
| 목적사업 계 | 901,335 | 305,800 | △595,535 | |
| 어르신 정보화교육 | 30,000 | 40,000 | 10,000 |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공요금 인상 반영하여 증액 |

| 사업명 | '22년 본예산(A) | '23년 예산(안)(B) | 증감액 (B-A) | 비 고 |
|-------------------------|----------------|------------------|--------------|------------------------------------------------------------|
| 어르신 자원봉사 | 139,335 | 0 | △139,335 | |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 100,000 | 100,000 | - | |
| 경로효친 행사지원 | 13,500 | 0 | △13,500 |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
|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 30,000 | 0 | △30,000 |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
|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 60,000 | 0 | △60,000 |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
| 어르신 지도자육성 | 110,500 | 0 | △110,500 | (일반회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 52,000 | 97,000 | 45,000 | 코로나19 정상화를 대비하여 코로나 이전 집행액 수준으로 증액 조정 |
| 어르신 주거지원 | 56,000 | 68,800 | 12,800 | 노인공동생활주택 월 임차료(재계약 증가액 포함), 노인공동생활주택 재계약 임차보증금 증액 |
|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 310,000 | 0 | △310,000 | (일반회계)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
| 예치금 | 877,641 | 1,430,187 | 552,546 | |
| 기본경비 | 3,000 | 3,000 | - | · 증감 없음 |

〈표〉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변화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적립금 | 적립금 총계 | 34,205 | 34,745 | 35,186 | 35,631 | 36,502 | |
| | 적립금 총계 증가율 | 1.1% | 1.5% | 1.2% | 1.3% | 2.4% | |
| 수입 | 합계 | 증감 | 403 | 540 | 441 | 445 | 861 |
| | | 전년대비증가율 | 36.3% | 33.9% | △18.3% | 0.9% | 93% |
| | 출연금 | 증감 | 0 | 0 | 0 | 0 | 0 |
| | | 전년대비증가율 | 0 | 0 | 0 | 0 | 0 |
| 지출 | 합계 | 증감 | 821 | 973 | 770 | 904 | 309 |
| | | 전년대비증가율 | △40% | 18.5% | △20.8% | 73.8% | △65.8% |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 지출액 | 금액 | 821 | 973 | 770 | 904 | 309 |
| | | 전년대비증가율 | △40% | 18.5% | △20.8% | 73.8% | △65.8% |
| 수지총 괄비교 | 고유목적 사업비 | 증감 | 820 | 970 | 767 | 901 | 306 |
| | | 전년대비증가율 | △42% | 18.2% | △20.9% | 17.4% | △66% |
| | 예치금 | 증감 | 1,018 | 905 | 1,337 | 878 | 1,430 |
| | | 전년대비증가율 | △29.1% | △11.1% | 47.7% | △34.3% | 62.8% |
| | 예탁금 | 증감 | 12,000 | 12,000 | 11,490 | 11,490 | 11,490 |
| | | 전년대비증가율 | 0% | 0% | △4.2% | 0% | 0% |

나)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계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 활동지원, 장애인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수입예상액은 9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음.

〈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항 목 | 수 입 계 획 | | |
|-------------|-----------|------------|------------|
| | 수입액 | 전년도수입액 | 증 감 |
| 합 계 | 9,736,747 | 12,124,190 | △2,387,443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2,282,359 | 1,982,610 | 299,749 |
| 예탁금원금회수 | 0 | 0 | 0 |
| 예치금회수 | 6,583,190 | 9,784,008 | △3,200,818 |
| 예수금 | 0 | 0 | 0 |
| 이자수입 | 871,198 | 357,572 | 513,626 |
| 기타수입 | 0 | 0 | 0 |

- 장애인복지계정은 비융자성 사업 1개, 융자성 사업 1개로 운용되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공모사업지원을 올

해부터는 일반회계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임.

〈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단위 : 천원)

| 항 목 | 지 출 계 획 | | |
|---------|-----------|------------|------------|
| | 지출액 | 전년도지출액 | 증 감 |
| 합 계 | 9,736,747 | 12,124,190 | △2,387,443 |
| 비용자성사업비 | 0 | 700,000 | △700,000 |
| 용자성사업비 | 7,400,000 | 4,800,000 | 2,600,000 |
| 기본경비 | 41,000 | 41,000 | 0 |
| 예탁금 | 0 | 0 | 0 |
| 예치금 | 2,295,747 | 6,583,190 | △4,287,443 |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계정에서는 용자성 사업인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사업에만 기금을 운영하게 됨.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등 사업의 경우 22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2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집행률과는 별도로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대비 54% 증액한 7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이는 제 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신규 지원 규모를 기존 26가구에서 40가구로 늘리는 데에 기인함.

〈표〉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사업 기금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2022년 | | 2023예산(안) (B) | 증감 (B-A) | (B-A)*100/ 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x-) 4,800,000 | (x-) 4,800,000 | (x-) 7,400,000 | (x-) 2,600,000 | (x-) 54 |
| 민간융자금 | (x-) 4,800,000 | (x-) 4,800,000 | (x-) 7,400,000 | (x-) 2,600,000 | (x-) 54 |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불용률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22년도의 낮은 집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사업 금액을 늘리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의 집행률을 점검하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적립금 | 적립금 총계 | 13,453 | 13,723 | 12,336 | 12,124 | 9,737 | |
| | 적립금 총계 증가율 | △0.2% | 2.0% | △10.1% | △1.7% | △19.7% | |
| 수입 | 합계 | 증감 | 13,453 | 13,723 | 12,336 | 12,124 | 9,737 |
| | | 전년대비증가율 | △0.2% | 2.0% | △10.1% | △1.7% | △19.7% |
| | 출연금 | 증감 | -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지출 | 합계 | 증감 | △23 | 270 | △1,387 | △212 | △2,387 |
| | | 전년대비증가율 | △0.2% | 2.0% | △10.1% | △1.7% | △19.7% |
| | 지출액 | 금액 | 13,453 | 13,723 | 12,336 | 12,124 | 9,737 |
| | | 전년대비증가율 | △0.2% | 2.0% | △10.1% | △1.7% | △19.7% |
| 수지 총괄 비교 | 고유목적 사업비 | 증감 | - | 2,500 | - | - | 7,400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83.8% | - | - | 34.5% |
| | 예치금 | 증감 | △951 | 56 | 1567 | 3201 | 1299 |
| | | 전년대비증가율 | △10.3% | 0.7% | △18.7% | △47.1% | △36.1% |
| | 예탁금 | 증감 | - | - |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회계연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작성

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수입예상액은 50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단위 :천원)

| 항 목 | 수 입 | | 증 감 |
|-------------|-----------|-----------|----------|
| | 수입액 | 전년도수입액 | |
| 합 계 | 5,040,609 | 4,641,781 | 398,828 |
| 용자금회수(이자포함) | 799,579 | 1,041,765 | △242,186 |
| 예탁금원금회수 | 0 | 0 | 0 |
| 예치금회수 | 3,839,531 | 3,408,279 | 431,252 |
| 예수금 | 0 | 0 | 0 |
| 이자수입 | 358,522 | 119,108 | 239,414 |
| 기타수입 | 42,977 | 72,629 | △29,652 |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용자성 사업 (총 4개) 에서는 6억 6백만원, 용자성 사업(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지원) 에서는 2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 항 목 | 지 출 | | 증 감 |
|---------|-----------|-----------|---------|
| | 지출액 | 전년도지출액 | |
| 합 계 | 5,040,609 | 4,641,781 | 398,828 |
| 비용자성사업비 | 605,819 | 597,250 | 8,569 |
| 용자성사업비 | 265,000 | 200,000 | 65,000 |
| 기본경비 | 5,000 | 5,000 | 0 |
| 예탁금 | 0 | 0 | 0 |
| 예치금 | 4,164,790 | 3,839,531 | 325,259 |

〈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적립금 | 적립금 총계 | 7,989 | 7,642 | 7,828 | 8,260 | 8,585 | |
| | 적립금 총계 증가율 | 1.1% | △4.3% | 2.4% | 5.5% | 3.9% | |
| 수입 | 합계 | 증감 | △511 | △206 | 305 | 276 | △33 |
| | | 전년대비증가율 | △37.3% | △24% | 46.7% | 28.8% | △2.7% |
| | 출연금 | 증감 | 0 | 0 | 0 | 0 | 0 |
| | | 전년대비증가율 | 0 | 0 | 0 | 0 | 0 |
| 지출 | 합계 | 증감 | △222 | 229 | △228 | 30 | 74 |
| | | 전년대비증가율 | △22.4% | 29.7% | △22.8% | 3.9% | 9.2% |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 지출액 | 금액 | 768 | 998 | 771 | 797 | 871 |
| | | 전년대비증가율 | △22.6% | 29.9% | △22.7% | 3.4% | 9.3% |
| 수지총 괄비교 | 고유목적사 | 증감 | △227 | 210 | △147 | △84 | 9 |
| | | 전년대비증가율 | △26.9% | 34% | △17.8% | △12.3% | 1.5% |
| | 예치금 | 증감 | 88 | △348 | 186 | 432 | 325 |
| | | 전년대비증가율 | 2.5% | △9.7% | 5.8% | 12.7% | 8.5% |
| | 예탁금 | 증감 | 0 | 0 | 0 | 0 | 0 |
| | | 전년대비증가율 | 0 | 0 | 0 | 0 | 0 |

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재해구호법」 제14조¹⁴⁾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음.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해 본 계정의 용도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¹⁵⁾에서 정하는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14) 「재해구호법」 제14조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내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수입예상액은 980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9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음.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 항 목 | 수 입 계 획 | | 증 감 |
|-------------|------------|-------------|--------------|
| | 수입액 | 전년도수입액 | |
| 합 계 | 98,051,123 | 807,011,061 | △708,959,938 |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 0 | 0 | 0 |
| 전입금 | 47,816,425 | 317,597,274 | △269,780,849 |
| 보조금 | 8,964,648 | 389,300,681 | △380,336,033 |
| 예탁금원금회수 | 0 | 0 | 0 |
| 예치금회수 | 40,255,050 | 99,098,106 | △58,843,056 |
| 이자수입 | 1,005,000 | 1,005,000 | 0 |
| 기타수입 | 10,000 | 10,000 | 0 |

- 내년도 지출계획은 98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089억 6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 항 목 | 지 출 계 획 | | 증 감 |
|---------|------------|-------------|--------------|
| | 지출액 | 전년도지출액 | |
| 합 계 | 98,051,123 | 807,011,061 | △708,959,938 |
| 비용자성사업비 | 34,525,560 | 765,478,212 | △730,952,652 |
| 융자성사업비 | 0 | 0 | 0 |
| 기본경비 | 0 | 0 | 0 |
| 예탁금 | 0 | 0 | 0 |
| 예치금 | 41,425,730 | 40,255,050 | 1,170,680 |
| 기타지출 | 22,099,833 | 1,277,799 | 20,822,034 |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 적립금 | 적립금 총계 | 0 | 250,000 | 131,014 | 317,597 | 47,816 | |
| | 적립금 총계 증가율 | - | - | △47.6% | 142.4% | △84.9% | |
| 수입 | 합계 | 증감 | 281 | 249,826 | 13,454 | 437,517 | △650,117 |
| | | 전년대비증가율 | 4.1% | 3,511.1% | 5.2% | 161.8% | △91.8% |
| | 출연금 | 증감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지출 | 합계 | 증감 | 1,077 | 481,046 | △263,114 | 542,168 | △708,853 |
| | | 전년대비증가율 | 25% | 8,943.8% | △54.1% | 243.4% | △92.6% |
| | 지출액 | 금액 | 5,379 | 486,424 | 223,311 | 766,756 | 56,625 |
| | | 전년대비증가율 | 25% | 8,943.8% | △54.1% | 243.4% | △92.6% |
| 수지총 괄비교 | 고유목적사업 비 | 증감 | 1,077 | 481,045 | △263,113 | 542,168 | △730,953 |
| | | 전년대비증가율 | 25% | 8,943.8% | △54.1% | 242.8% | △95.5% |
| | 예치금 | 증감 | 35,067 | △196,143 | 47,085 | △58,843 | 1,171 |
| | | 전년대비증가율 | 16.5% | △79% | 90.5% | △59.4% | 2.9% |
| | 예탁금 | 증감 | | | |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IV 종합의견

-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에 있음.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23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 이자부담이 증가하며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예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¹⁶⁾

16) 국회예산정책처(2022).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도 2023년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2023년 복지정책실에서는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8% 증액 편성한 9조 9,468억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체 2023년도 서울시 편성 예산 47조 2,052억 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임.
- 분야별로는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특별시(6조 3,522억), 지역사회 안심돌봄 지원(1,952억),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서울(2,580억),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1,291억), 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강화(6,616억)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가운데 순수 신규사업은 총 5개, 35억 3,190만원으로 그 외에는 기존 사업 확대, 회계과목 조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정책실 증액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비 사업의 매칭금액 증가로 장애수당 (90억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949억 6천만원), 긴급복지 지원(121억 9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시비사업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대상자를 2배로 늘리는 등 ‘22년 대비 예산이 108억 6천만원 증액하였으며,
- 그 외에도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52억 9천만원 증액),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지원(41억 7천만원 증액) 등의 예산편성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홍보비 예산 등 과다 계상된 예산의 경우 그 편성규모의 적정성, 사회적고립가구 예방사업(우리동네돌봄단) 등 사업구조가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의 경우 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만큼 장기요양보험 수가수입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늘려가야 하나, 여전히 출연금이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음. 기관설립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출연편성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하겠음.
- 그 외에도,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분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